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안내문

항상 철도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 신설에 따라 2021. 1. 1.일 부터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영세율 적용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마목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 영세율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세율 적용 요건

-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 도시철도건설(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 포함)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
- ※ 하도급, 재화의 공급·재화의 부수 용역,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설계·감리용역 등 제외

□ 도시철도 범위

-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 시설물 포함 <소비 22601-278, 1988. 3. 29 > (기본통칙 105-0...3 제2항).
- 도시철도란 “① 서울 지하철 노선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② 요금체계가 동일하며, ③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되는 철도”(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기획재정부 질의모음 답변, 2005.10.11.>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판단하며,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규 도시철도의 건설 외에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을 포함한다 <재부가-867, 2007. 12. 20.>

□ 용역 공급

-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6항>

- 도시철도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OO 철도공사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 등과 같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은 물론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비 22601-766, 1985. 7. 16>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예>

한국철도공사가 건설업체와 계약금액 100원으로 계약할 경우 건설업자가 처리하는 부가가치세는

- 매출부가세 "0" (영의세율적용 가능)
- 매입부가세 "10" (영의세율적용 불가능)

∴ 매출 "0" - 매입 10원 = 10원(부가세 신고시 공제)

- ☞ 실제 건설업체에서 소요되는 금액은 100원이므로 공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원만 공사대금으로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 외국인, 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중략)

부칙 <제1775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